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33 발의연월일: 2021. 10. 13.

발 의 자: 조명희・金炳旭・김용판

박대수 · 성일종 · 유의동

이태규・최승재・추경호

홍문표·황보승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-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하였으나,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하였고 그 후 검사의뢰자가 사망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여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에게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혈전증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혈소판감소 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 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,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) ①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 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검사의뢰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신 설>	제29조의2(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에 대한 검사) ① 「의료법」 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 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
	증명 수 물고인유도 등 물건 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 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종류와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검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